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52141 판결 손해배상(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6나5214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22. 선고 2015가소7023836 판결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G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인터넷언론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 버'(이하 '네이버'라고 만 한다)에 게시된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
- 나. 한겨례신문사는, 원고가 참석한 'I'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장소 근처 고깃집에 밥값 3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H'에서 위식 당 주인이 친노 종북 편향의 인물과 어울렸다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G 11:55경 네이버에 "J"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다. 이에 피고들은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 아래에 다음과 같이 댓글을 각 달았다.
- 1) 피고 B는 G 12:43경 "A는 사람이 어디까지 찌질해질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는 구나. 궁 호 궁"라는 댓글을 달았다.
- 2) 피고 C은 G 12:23경 "역~겹~다.....그놈의 종북좌빨 색칠~~~쳐먹었으면 돈내야 지~~도둑놈 시키 야~~"라는 댓글을 달았다.
- 3) 피고 D은 G 13:15경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음식이 비쌌다 해도 그럼 먹기전에 다른 식당을 가면되지 다쳐먹고 나서 비싸고 서비스별로니 돈을 못내겠다? 이건 완전 도둑놈입니다. 거기다가 단지 음식장사 하시는 분한테 종북 이라뇨 그놈에 종북프레임 참 다양하게 쳐 드시네요 말이 되는 소 릴크크 그럼 종북식당 가서 매출올려준 A씨도 종북이네 "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 4) 피고 E은 G 13:43경 "한겨레보고 치졸하다고 하는데.. 밥값 시비붙었다고 식당 사장을 지가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종북식당이라고 까댄건 졸라 대인배적인 건가보지 ??? "라는 댓글을 달았다.
- 5) 피고 F는 G 12:31경 "우리동네 양아치도 이런짓은 안한다.. 쯔"라는 댓글을 달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악성댓글을 각 기재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악성댓글 기 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5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1) 관련 법리
-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

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21491, 2150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행위자의 주요한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무방하고,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무방하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나)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 2) 피고 B, F의 댓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B, F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각 댓글은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원고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피고 B, F의 위각 댓글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 B, F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형식·횟수와 그 매체, 표현의 내용·의미·방법과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불쾌하

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978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 다) 따라서 피고 B, F의 위 각 댓글 작성·게시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어, 원고의 피고 B, F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 3) 피고 C의 댓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C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댓글은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원고의 행위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일 뿐 명예훼손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 C의 위 댓글 중 "도둑놈 시키야"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C이 원고에 대해 비판적인 이사건 기사를 읽고 위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원고의 행위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3 피고 C이 이 사건 기사를 읽고 바로 댓글을 남기면서 "도둑놈 시키야"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원고의 행위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피고 C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도둑놈'에 '시키야'라는 속어를 부가하여 그 표현의 강도가 약화되고 풍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도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Col 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댓글 작성·게시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D의 댓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댓글 중 "다쳐먹고 나서 비싸고 서비스별로니 돈을 못내겠다?", "단지 음식장사 하시는 분한테 종북이라뇨"라는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활동,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 피고 D이 작성한 댓글 내용과 형식, 피고 D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D의 위 댓글 중 "이건 완전 도둑놈입니다"라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D이 원고에 대해 비판적인 이 사건 기사를 읽고 위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원고의 행위나 태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3 피고 Dol 이 사건 기사를 읽고 바로 댓글을 남기면서 "이건 완전 도둑놈입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행위가 비판받 아 마땅하다는 피고 D의 의견을 강조한 나머지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4 피고 D이 전반적으로 원고가 한 행위를 적시하고 평가·비판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건 완전 도둑놈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그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 D이 위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댓글 작성·게시행위는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E의 댓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댓글 중 "밥값 시비붙었다고 식당사장을 지가 운영하는 신문사에서 종북식당이라고 까댄건"이라는 부분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 피고 E이 작성한 댓글 내용과 형식, 피고 E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볼수 있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 E의 위 댓글 중 "까댄건", "졸라 대인배적인 건가 보지"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 E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표현의 형식·횟수와 그 매체, 표현의 내용·의미·방법과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대상이 된 원고의 행위와 태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댓글 작성· 게시행위 또한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